



소통하는 의정
공감받는 의회

제37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
(제1차 교육위원회)
2020. 3. 13.(금) 10:00

검 토 보 고 서

충청북도교육청 교복 지원 조례안

교 육 위 원 회
수 석 전 문 위 원

충청북도교육청 교복 지원 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1. 발 의 자: 서동학 의원 등 13인

2. 발의일자 및 회부일자

- 발의일자: 2020년 3월 4일
- 회부일자: 2020년 3월 5일

3. 제정이유

- 학생의 교복 구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교육복지를 증진시켜 나가는데 이바지하고자 함.

4. 주요내용

- 교복 지원 목적(안 제1조)
- 정의(안 제2조)
- 교육감 및 학교장의 책무(안 제3조, 안 제4조)
- 지원대상(안 제5조)
- 지원방법(안 제6조)
- 환수(안 제7조)
- 협력체계 구축(안 제8조)

5. 검토의견

가. 주요내용 검토

- 본 제정 조례안은 교복구매에 따른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감소와 교육복지 증진을 위해 중·고·특수학교 1학년 신입생과 전·편입 학생의 교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.
- 조례안 주요내용으로 안 제3조에 학생 교복 지원을 위한 시책 수립과 시행을 교육감의 책무로 규정하고, 안 제4조에 학교장의 책무로 합리적인 가격과 품질 좋은 교복 공급 노력을 규정하여 교복 지원 정책 시행 의지와 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하였으며,
- 안 제5조에 중·고·특수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과 타 시·도 또는 국외에서 교복을 입는 학교에 1학년으로 전입 또는 편입하는 학생을 교복 지원 대상으로 명시하고, 안 제6조에 교복구입비 지원 방법을 현물 지원으로 명시하여 교복 지원 사업의 시행 체계를 명료화하였으며,
- 안 제7조에 교복 지원 대상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복구입비를 지원 받은 경우 교복 지원비 전액을 환수하도록 규정함으로써, 예산 지원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비효율적 예산집행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였음.

나. 종합 검토의견

- 본 제정 조례안은 충청북도교육청의 교복 지원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과 교육의 공공성 강화 및 의무무상교육을 확대해 나가는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,
- 전체적인 조문 구성과 내용에 있어서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고 「법령 입안 및 심사기준」을 준수하고 있어, 타당한 조례 제정이라 판단됨.